

# 검 토 보 고

1997. 3.14  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 : 1997년 3월 6일

○ 회 부 : 1997년 3월 6일

## 3. 제안이유

- '96. 2.13일 공포 시행된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직명변경된 재해구호기금의 기금운용관, 기금분임운용관,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명을 정비하여 기금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

## 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관리 조례중 기금운용 및 출납공무원의 직명변경
  - 기금운용관 : 보사환경국장 → 사회복지국장
  - 기금분임운용관 : 사회과장 → 사회복지과장
  - 기금출납공무원 : 복지계장 → 사회복지계장

## 5. 검토보고

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  
본 개정조례(안)은

- '96. 2.13일 공포시행된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직명변경을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